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목 차>

1.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용기준

※ 소관부서 연락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044-201-3746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용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 제5호 다),라) 및 가목11)</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10.14~2026.11.23</td></tr>
<tr><td rowspan="5">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ㅇ(추진배경) 개발제한구역(GB) 내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온실·축사 등은 설치가능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제어설비, 관수·양액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설치 가능시설로 미규정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온실과 유사하나 각종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온실 허용면적(500㎡+2년 운영 시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으로는 설치가 곤란하여 주민의 신기술 활용 농업활동 제약

ㅇ(정부개입 필요성)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허가기준을 정할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ㅇ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허가기준 부여

– (자격) 농림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GB 내 주택 소유·거주 1가구당 1개 시설)
– (면적) 시설 바닥면적 2,000㎡ 이하, 지상1층,
관리실·기계실·자재보관실은 시설 내부 200㎡ 이하,
축열조 등 부속시설은 외부 100㎡ 이하
– (시설) 형태·구조·설비는 농림부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 (바닥) 건축물이 아닌 경우 불투수성 포장은 바닥면적 15% 이하
– (기타) 주거목적 사용 불가, 용도 폐지 시 철거·원상복구</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table>
<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r><td>피규제자</td><td>GB 주민(농림업 및 수산업 종사자) 중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td><td>연간 약 9건</td></tr>
<tr><td>이해관계자</td><td>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허가권자),
GB 주민</td><td>GB 주민 약 8만명</td></tr>
</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GB 주민도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허가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GB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4">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29.44</td><td></td><td>29.44</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이용한 영농</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부담 등의 증분비용만 산정
* 시설 설치 등은 피규제자의 자발적 투자로 제외

○ (정성) 신기술을 이용한 영농기회 확보 등으로 피규제자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td></tr>
<tr><td rowspan="2">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 rowspan="13">기타</td><td rowspan="8">12.규제일몰제</td><td>대분류</td><td colspan="2">소분류</td></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colspan="2">일몰설정여부</td><td>일몰조문</td><td>연장여부</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일몰유형</td><td>일몰설정기간</td><td>일몰주기</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3">미적용(GB 내 행위제한은 법 제12조 및 별표1의 열거주의 체계에 따라 운영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곤란)</td></tr>
<tr><td rowspan="2">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연간균등순비용</td></tr>
<tr><td>적용</td><td></td><td></td><td></td></tr>
<tr><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해당없음</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5. ----------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 종묘배양장, 온실 및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를 말	라) ---------- 종묘배양장, 온실 및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

현 행	개 정 안
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환경제어설비, 관수·양액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의 형태·구조 및 설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지상 1층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바닥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자재보관실은 시설 내부에 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현 행	개 정 안
	(바닥면적에 포함한다)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바닥의 불투수성 포장 면적은 시설 바닥면적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시설 외부에 축열조, 히트펌프 실외기,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에 따른 시설 바닥면적과 별도로 시설 외부 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GB 내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온실·축사·작물 재배사 등은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스마트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온실과 유사하나 환경제어설비, 관수·양액설비, 환경센서(온·습도, CO_2 등) 등 각종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서,

- 온실 허용면적(500㎡ + 2년 이상 운영 시 지자체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으로는 사실상 설치가 곤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3.7.25)·시행('24.7.26) 등으로 스마트농업이 제도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 GB 주민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입지제약으로 인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GB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별표1 제5호(주민 주거·편익·생업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가기준 신설

나. 정부개입 필요성

○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 개발행위는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체계로 운영되며, 허용되는 시설도 GB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만 허용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자격·면적·시설기준 등 제한이 없을 경우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GB 훼손 우려

- 이에 따라 자격·면적·시설기준 등의 GB 내 입지 허가기준을 정하여 GB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입지 허용 추진

* 입지 기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까지 연쇄적 완화 요청이 이어져 개발제한구역법 형해화 및 GB 관리에 악영향 우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자격·면적·시설기준 마련
	내용	시행령 별표 1(GB 내 입지가능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추가하여 설치를 허용하되, - 자격(농림어업 종사 1가구), 면적(바닥면적 2,000㎡ 이하, 1층), 시설기준(농림부 고시 적합), 불투수 포장(15% 이하), 원상복구 의무 등 기준 부여
규제대안2	대안명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기존 온실 기준 준용
	내용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온실과 동일한 기준(500㎡ + 2년 이상 운영 시 지자체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을 적용하여 허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자격 · 면적 · 시설기준 등 허가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 방지	허가신청에 따른 불편함 발생, 기준 준수에 따른 설치 제약
규제대안2	現 온실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 신설 필요 없음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각종 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온실 허용규모로는 설치·운영이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26.05 ~ 07, 서면 및 대면	시설 내부 면적 확대 등	협의 반영 (내부 면적 2,000㎡ 적용 등)
국농업기술진흥원	'26.07.14, 서면	시설 외부에 부대시설 입지 허용	반영 (외부 부지에 100㎡ 가능)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GB 내 입지 가능 시설은 GB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허용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도 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준 설정 필요

- 면적은 동식물 관련 시설 중 허용면적이 가장 큰 축사의 허용면적(기본 1,000㎡+ 2년 이상 운영 시 지자체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최초 설치 시부터 환경제어설비 등 각종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기간 요건 없이 처음부터 최대 2,000㎡까지 면적을 허용함

○ 자격요건은 기존 축사·온실 등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GB 내 농림어업 종사 1가구 당 1개 시설)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부 자본에 의한 투기적 설치를 차단

○ 규제대안 2(온실 기준 준용)는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시설 특성(각종 설비의 복합 설치로 일정 규모 이상 필요)상 허용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 허용 기준이 없는 전면 허용은 무분별한 GB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 GB 주민도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 자격·면적·시설 등 허용기준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생업 지원과 GB 지정 목적 및 적정한 관리를 조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건은 현행 법령상 GB 내 설치가 불가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를 새로이 허용하면서, GB 지정 목적에 따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의 실질은 GB 주민의 생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완화적 성격이며, 부여되는 허가기준(자격·면적·시설 등)은 기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동일하거나 완화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제한임

○ 허용을 위해 수반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GB 훼손방지 및 적정 관리, 주민 생업 지원)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단(허가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설의 형태·구조·설비 기준을 농림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GB 내 입지 허용을 위한 시설기준으로서 제품의 시험·검사·인증 등 기술규정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의 정의 및 육성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동 법률의 스마트농업 정의를 인용하여 시설 특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자격·면적·시설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자격 · 면적 · 시설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9.44		29.44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9.44		29.4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본 사안은 현행 법령상 GB 내 설치가 불가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허용 확대의 직접 수혜자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격·면적 등 기준은 기존 축사·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동일한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피규제자 및 허가권자 모두에게 익숙한 기준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로 처리되어 기존 GB 관리체계(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내에서 집행되므로 별도의 조직·인력 신설 없이 집행 가능

허가 이후 이행 여부는 GB 관리실태 점검 체계를 통해 관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피규제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며, 집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아니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26.5 ~ 26.7.)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26.8.)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해당없음	폐지·완화 내용 없음	없음

4. 종합결론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온실과 유사하나 각종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서 현행 온실 허용면적으로는 사실상 설치가 곤란하여, GB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

○ 본 건은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설치를 새로이 허용하면서 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생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완화적 성격의 규제임

○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목적에 따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동일하거나 완화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GB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자격 · 면적 · 시설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29.44		29.44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9.44		29.4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부담 등의 증분비용만 산정 * 시설 설치 등은 피규제자의 자발적 투자로 제외 ○ (정성) 신기술을 이용한 영농기회 확보 등으로 피규제자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GB 내 입지를 허용하되, 자격·면적·시설기준 마련>

①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자
활동제목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용기준 준수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9,441,76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건당 투입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 × 연간 허가 건수 (16*25839*9)
근거설명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관련 서류 등) 작성 ·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1건당 16시간(2일)으로 설정 ㅇ 시간당 근로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25,839원 / '25.6월 기준)을 적용 ㅇ 연간 허가 건수는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약 9건으로 설정 * (산식) GB 이외 전국 스마트농업 재배시설(건축법 고정식 온실 기준, 0.2ha 미만 건수) 연간 설치건수(219건) × GB 이외 전국 농경지 대비 GB 내 농경지 면적 비율(3.8%) = 9건 (근거) GB 이외 전국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건수 : 219건('23~ '25년 평균) / GB 내 농경지 : 약 717㎡, GB 이외 : 약 18,727㎡

(정성)영향집단명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자
활동제목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허용기준 준수
비용항목	기타 순응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 바닥 불투수성 포장 15% 제한에 따른 시공상 제약은 투수성 자재 선택 등으로 대응 가능하여 유의미한 추가 비용을 유발하지 아니함

	○ 용도 폐지 시 철거·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비용은 용도 폐지라는 조건 성취 시에만 발생(시점·규모 예측 곤란)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GB 내 농림어업 종사자
활동제목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허용
편익항목	GB 내 신기술을 이용한 영농 활동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현행 법령상 불가하였던 GB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GB 주민도 신기술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됨 ○ 온실 기본 허용면적(500㎡) 대비 4배 규모(2,000㎡)의 대규모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운영이 가능해짐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편익(신규 영농기회)이 허가 신청·기준 확인 등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GB 주민(일반 국민)
활동제목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허용
편익항목	GB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생업활동 지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자격·면적·시설기준 등을 통해 무분별한 훼손없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GB 기능 유지 ○ 불투수성 포장 제한(15% 이하)으로 토양·물순환 기능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상복구 의무 등 GB 훼손 고착화 방지